

제 1475 호
1990. 2. 26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고 건수
편집인 : 공 부 관 유 천 수
전화 : 731-6111~3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 735-3337

시 보

차 례

● 공문시행	
물품관리전환소요조치	3
● 규 칙	
제348호 서울특별시공 사립학교수입료및입학금에관한규정중 개정규칙	4
● 훈 령	
제695호 서울특별시올림픽경기비대운영규정제지규정	6

<이편계속>

영 판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고 시		
제 49 호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유원지,도로)및결정(학교,사회복지,어린이공원)	6
◎ 공 고		
제 94 호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	7
제 95 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	8
제 96 호	제2종전기공사업면허영업정지공고	8
제107호	관인재교부및신도교부공고	9
제109호	비료생산업허가사항변경허가	10
◎ 구 고 시		
제 2 호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인가	10
제 9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변경	10
◎ 구 공 고		
제 8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1
제 9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1
제 10 호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시행허가변경공람공고	12
제 14 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및영업정지확공고	12
제 15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3
제 21 호	관인재교부공고	13
제 59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3
제 81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4
◎ 사업소고시		
제 6 호	하천점용허가	15
제 9 호	하천점용허가	16
◎ 사 령		

공문시행

물품관리전환소요조치

1.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어린이대공원)

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목록에 대하여 관리
 전환 소요를 조치하니 회당부서는 '90.
 2. 26일까지 관리전환을 요청하기 바라며
 기간내 요청이 없을사는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하겠습니다.

가. 관리전환 물품 목록

연번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	취득일자	상태	처분의견
1	강연대	90×115×45	대	1	84,000	89.11.30불용예정	수리불가	폐기·매각
2	선종기	FW-351	"	1	40,085	"	노후	"
3	외과용가위	외산리형	개	1	"	"	"	"
4	"	외산곡형	"	1	"	"	"	"
5	남비	"	"	1	"	"	"	"
6	ㄷ형삼	"	"	6	"	"	"	"
7	팔안장	소형	"	3	"	"	"	"
8	번식장	90×45×35	"	100	"	"	"	"
9	손잡이저스	스텐	"	2	"	"	"	"
10	철계세장	75×75×150	"	5	625,000	"	"	"
11	후크	600A	"	2	64,000	"	"	"
12	히터	100V	"	4	"	"	"	"
13	전경가위	"	"	9	"	"	"	"
14	낫	양날	"	5	"	"	"	"
15	유리판	"	"	1	"	"	"	"
16	쇠물대	"	"	1	"	"	"	"
17	권총고대	10V100W	"	1	2,400	"	"	"
18	굴	15%	"	"	"	"	"	"
19	캐스공병	20kg	"	1	22,766	"	"	"
20	산소병	6,000ℓ	"	1	54,825	"	"	"
21	아세틸렌병	3kg	"	1	25,000	"	"	"
22	발전기	px-18,150kw	대	1	"	"	"	"
23	링줄대	150cm	개	1	18,000	"	"	"
24	마취기	Q13mm R5mm	대	1	57,110	"	"	"
25	수압펌프	FHK	개	1	550,000	"	"	"
26	전기용접기	프라스텍26	"	1	34,000	"	"	"
27	전기용접자 보속독기	주사기소독형	"	1	44,666	"	"	"

연번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	취득일자	상태	처분요건
28	현미경	일산 150배	대	1	266,000	'89.11.30불용예정	노후	폐기·매각
29	분무기	지계 18	개	2	64,000	"	"	"
30	"	백면	"	1	32,000	"	"	"
31	"	지렛대식	"	1	33,564	"	"	"
32	"	GP-10	"	1	19,300	"	"	"
		수동식지개용						
33	정수기	수족관용	개	9	295,550	"	"	"
34	냉장고	금성200#	대	1	360,250	"	"	"

규 칙

서울특별시공·사립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 관한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0. 2. 26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김상준 ④

●교육규칙제348호

서울특별시공·사립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 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공·사립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 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별표1-1), (별표1-2), (별표2-1) 및 (별표2-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경수금액) ①공립의 학교와 사립의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기술학교, 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액의 경수금액은 (별표1-1), (별표1-2)와 같다. 다만, 예·체능계 고등학교와 각종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설정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별표1-1)

(단위: 원)

학교별	개업별	구분 학년별	년 기		수업료	입학금	적용지	비고	
			월	법					
대 학	인문·사회	1-4 학년	년	기	370,000	84,000	복합지	6개월을 1기로함	
			년	기	185,000				
	이 학	"	년	기	380,000	84,000	"	"	
			년	기	190,000				
	수 학 과	"	"	년	기	380,000	84,000	"	"
				년	기	190,000			
공 학	"	"	년	기	405,000	84,000	"	"	
			년	기	202,500				
대 학 원	인문·사회	1-2 학년	년	기	370,000	84,000	"	"	
			년	기	185,000				

학교별	개설연	구분		수업료	입학금	적용 지구	비고
		학년별	년월별				
대학원	공학· 예능	1-2 학년	년	405,000	84,000	특급지	6개월을 1기로함
			기	202,500			
도시행정 대학원	인문· 사회	"	년	296,000	84,000	"	"
			기	148,000			
대학원	공학· 예능	"	년	326,000	84,000	"	"
			기	162,000			
경영대학원	인문· 사회	"	년	296,000	84,000	"	"
			기	148,000			
중·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장의표							
(별표1-2)				(단위: 원)			
학교별	구분	년월별	수업료	입학금	적용 지구	비고	
							학년별
고등학교 (공·사립인문·실업)	"	"	년	441,600	7,700	특급지	
			기	110,400			
고등기술학교(고)	"	"	년	418,800	7,200	"	
			기	104,700			
방송통신고등학교	"	"	년	52,200	3,000	6개월을 1기로 정 수함	
			기	26,100			
중학교(공·사립)	"	"	년	242,400	6,400	3개월을 1기로 정 수함	
			기	60,600			
기술학교(중)	"	"	년	217,200	3,800	"	
			기	54,300			
고등공민학교	"	"	년	142,800	3,800	"	
			기	35,700			
대학교 수업료 분할 징수표							
(별표2-1)				(단위: 원)			
학교별	개설연	구분		1 기 (3. 1.-8. 31)	2 기 (9. 1.-익년2월)		
		학년별	년월별				
대학	인문·사회	1-4학년	년	185,000	185,000		
			기	190,000	190,000		
			년	190,000	190,000		
			기	202,500	202,500		

학교별	구분		1 기	2 기	
	개 열 별	학 년 별	(3. 1.-8. 31)	(9. 1.-익년2월)	
대 학 원	인문·사회	1-2학년	185,000	185,000	
	공학·예능	"	202,500	202,500	
도 시 행 정 대 학 원	인문·사회	"	148,000	148,000	
	공학·예능	"	162,000	162,000	
경 영 대 학 원	인문·사회	"	148,000	148,000	
중·고등학교, 공·사립학교 수업료 분할 징수표					
(별표2-2)			(단위: 원)		
학교별	기 별	1 기	2 기		
		(3. 1.-8. 31)	(9. 1.-익년2월)		
방송통신고등학교		26,100	26,100		
학교별	기 별	1 기	2 기	3 기	4 기
		(3. 1-5.31)	(6. 1-8.31)	(9. 1-11.30)	(12.1-익년2월)
고등학교(공·사립,인문·실업)		110,400	110,400	110,400	110,400
고 등 기 술 학 교 (고)		104,700	104,700	104,700	104,700
중 학 교 (공 · 사 립)		60,600	60,600	60,600	60,600
기 술 학 교 (중)		54,300	54,300	54,300	54,300
고 등 공 민 학 교		35,700	35,700	35,700	35,700
<p>1. 이 표에서 "인문계"라 함은 실업계 이외의 학교 및 학과를 말하고 "실업계"라 함은 중학교·고등학교에 있어서는 공업계, 농업계 및 수산계 각 학교 또는 학과와 기타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또는 학과를 말한다.</p> <p>2. 서울특별시 전역을 특급지로 한다.</p>		<p>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경비대운영규정폐지규정을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 . . .</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 고 건</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p style="text-align: center;">고 시</p> </div> <p>◎서울특별시고시제49호</p> <p>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유원지,도로)및 결정(학교,사회복지시설,어린이공원)</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유원지, 도로)및 결정(학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공원)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p style="text-align: center;">훈 령</p> </div> <p>◎서울특별시훈령제695호</p> <p>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경비대운영규정폐지규정</p> <p>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경비대운영규정을 폐지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이하의 변경결정 및 결정하였기 같은별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사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장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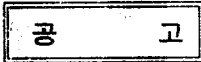
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0. 2. 21
서울특별시

가.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결정조서

구분	시 설 명	면 적 (㎡)	위 치	비 고
폐지	유원지	25,616	강동구 둔촌동 81-1외 38필지	변 경
신설	학교	15,998	강동구 둔촌동 79-3외 18필지	결 정
신설	사회복지시설	4,661	강동구 둔촌동 79-2외 7필지	결 정
신설	어린이공원	2,226	강동구 둔촌동 79-4외 4필지	결 정

구분	시설명	등급	구분	폭원(㎡)	연장(㎡)	시 점	중 점	비고
폐지	도로	소로	2	8	134	둔촌 79-14	둔촌 82-3	변경
폐지	도로	소로	2	8	124	둔촌 79-1	둔촌 82-12	변경

나. 관계도서 : 위 비치도면과 같음. 끝.



◎서울특별시공고제94호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영업
정지처분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
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 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990. 2.

서울특별시

1. 주택건설사업자 영업정지

등 록 번호	대표자	상 호	사무소소재지	영 업 정지일자	영 업 정지기간	사 유	근거법령
84-44	문영봉 박근택	한일북행벽계	염창동283-13	2. 21	'90. 2. 21 - 8. 20	실 착 미 탈	주택건설 촉진법제 2, 3호
84-181	이상기	상기주택건설	화곡동342054	2. 21	"	"	"
82-334	윤인술	태 진 주 택	염창동282-26	2. 21	"	"	"
82-11	임휘일	삼원기업사	염창동261-4	2. 21	'90. 2. 21 - 5. 20	"	"
86-400	임휘일	(주)삼원주택	"	2. 21	"	"	"

등록번호	대표자	상호	사무소소재지	영업영역 경지일자	영업영역 경지기간	사유	근거법령
83-72	최윤상	유림주택(주)	화곡동909-3	2. 21	'90. 2. 21 -5. 20	사무실 미확보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제2호
84-228	이민자	낙원주택개발	등촌동493-1	2. 21	'90. 2. 21 -8. 20	실적 미달	"
85	이태희	이화주택개발(주)	화곡동907-2	2. 21	'90. 2. 21 -5. 20	사무실 미확보	"

◎서울특별시공고제95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

주택건설 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등록

말소 처분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
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 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2.

서울특별시청

1.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말소

등록번호	대표자	상호	사무소소재지	등록말소 일자	사유	근거법령
79-246	원종만	성원주택(주)	염창동270-1	'90. 2. 21	실적미채출 청문불응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1,2,3호
85-2	재영현	신성주택	방화동487-4	"	"	"
86-76	박용락	(주)대광빌라	화곡동903-1	"	"	"
89-67	송춘길	(주)지승건설	등촌동564-2	"	"	"
83-87	유봉길	우당주택	염창동 282-24	"	사무실폐쇄 청문불응	"
84-67	이재덕	(주)새홍건설	화곡동987-7	"	"	"
84-553	이상희	(주)남해건설	화곡동347-7	"	"	"
85-10	김정수	(주)성림개발	화곡동24-200	"	"	"
86-325	변홍식	홍주개발(주)	화곡동986-5	"	"	"

◎서울특별시공고제96호

제2종전기공사업면허영입정지공고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국세채납 제2종

전기공사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하였
기 전기공사업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이
를 공고합니다.

1990. 2.

서울특별시청 고 건

- 아 래 -

면허번호	업종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사유
제 352 호	저전전기	심재동	강남구 역삼동 779-9	영업정지 2개월 ('90. 2. 17- '90. 4. 16)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 제2항 및 제4 항 위반

◎서울특별시공고제107호

관인재교부및신조교부공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설치조례('90. 2. 15 서울특별시 조례제2579호), 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설치조례 폐지조례('90. 2. 15 서울특별시 조례 제2580호) 및 서울특별시립운동장 설치조례 폐지






조례('90. 2. 15 조례 제2581호)에 의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의 관인을 관인 규정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8조와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재교부 및 신조교부함을 동규칙 제9조 및 동규칙 제8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1990. 2. 23

서울특별시장

1. 사용개시 및 폐기일자 : 1990년 2월 23일

2. 승인인영내역

인영	신 규 폐 기				
					
공인명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인(동대문운동장 전용)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인(목동운동장 전용)	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인	서울특별시립운동장 장의 인

◎서울특별시공고제109호

비료생산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비료관리법 제1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과 동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표이사 변경이사 변경 허가하였기 동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990. 2. 24

서울특별시

1. 허가번호

- 1) 01-가-복합2-2 2) 01-가-복합3-2
- 3) 01-가-복합4-2 4) 01-가-복사2-2
- 5) 01-가-유기질5-2 6) 01-가-유기질11-2
- 7) 01-가-유기질14-2 8) 01-가-유기질15-2
- 9) 01-나-부산물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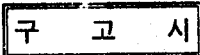
2. 상호 : 제일제당주식회사

3. 사업장소재지 : 서울 강서구 가양동 92

4. 대표자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명	손영희	김정순
주소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파트95-107	강남구 역삼동 772-3 개나리아파트 35동 306호

5. 변경허가 년월일 : 1990. 2. 24



◎관악구고시제2호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인가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550호(90.1.5)로 시설 결정하고 서고 제159호(90.1.8)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

조 동시행령 제26조,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권한 위임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공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전답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로록함.

1990. 2.

관악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분천동 500번지 주변도로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분천본동 500번지 주변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B=6m, L=90m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공 : 시행인가일로부터 7일 이내
- 준공 : 90. 12. 31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이외의 명세 : 별첨

바) 토지(건물)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사) 시행인가 설계도서 별첨(계재 생략)

◎성동구고시제9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변경

- 1. 서울시고시제160호(80.5.12)호로 도시계획시설(학교)설정 및 같은 고시 제648호(85.9.27)로 사업시행허가 변경되고 성동구고시제66호(87.10.16)사업시행허가변경되고 같은 고시69호(88.11.3)로 사업시행변경되고, 성동구 공고 제54호(89.9.29)로 도시계획사업완료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권한 위임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계획과(전화 450-138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2. 14

성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자: 성동구 광장-553-1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학교)
명칭: 다니엘학원 시설확충(자립학교장 증축)

다. 사업시행자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장동 533-1번지 일대

성명: 사회복지법인 구형희 대표 조성모

라. 사업의 규모

- 대지: 6,743제곱미터
- 기존연면적: 3,155.15제곱미터
- 변경연면적: 3,817.55제곱미터 (중 622.40제곱미터)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 준공예정일: 90. 12. 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면,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사회복지 법인 구형희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생략

구 공 고

◎강동구공고제8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공람공고

1. 서울시 고시 제3호(69.1.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서울시 고시제260호(89.6.8)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되고 강동고시제6호(89.6.29)지적 승인된 성내동 147의 10-213의 2개소 도로개설

공사를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 인가를 받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 공고합니다.

가. 공람장소: 강동구청 토목과
나. 공람기간: 90. 2. - 3.

1990. 2. 20

강 동 구 청 장

공 략 개 요

1. 사업명: 성내동 147의 10-213의 2개소 도로 개설공사
2. 사업 시행 구간 및 규모
 - 성내동 147의10-213간 B=6m L=90m
 - 암사동 457의21-24간 B=4m L=53m
 - 천호동 298-4가각 정비 100m
3. 사업시행자: 강동구청장
4. 사업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5. 기타사항: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공람 장소에 제출 및 문의 바람.

◎강동구공고제9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공람공고

1. 서울시 고시 34호(76.2.20)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된 둔촌동 70주 변도로개설공사를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인가를 받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 공고합니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영고로 갈음합니다.

가. 공람장소: 강동구청 토목과
나. 공람기간: 90. 2. 21 - 90. 3. 11

1990. 2

강 동 구 청 장

<p>공 랑 개 요</p> <p>1. 사업명 : 둔촌동 70주변 도로개설공사 2. 사업시행구간 : 둔촌동70-27-둔촌동70-46 3. 사업시행규모 : 도로개설 B=6m, L=43m 4. 사업시행장 : 강동구청장 5. 사업착수일 및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간 6. 기타사항 :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공람 장소에 제출 및 문의바람.</p>		<p>◎성동구공고제10호</p> <p>도시계획사업(정답화관)시행허가변경공람공고</p> <p>1. 서울특별시 도시 제491호(86.7.15)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사업시행허가요자 도시계획법 제25조 외2에 의거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한편도서는 성동구청 도시경비과(전화 450-1385)에 비치하오니 본 사업계획에 따른 의견은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 2. 27 성 동 구 청 장</p>					
<p>토 지 조 서</p>							
지 번	지 목	면 적	주 소 성 명				
둔촌동 70-95	답	206.0㎡	동대문구 계기동 김수철 818				
사업의 종류	위 치	사 업 내 용	시 행 자 공 랑 기 간				
도시 계획 사업	성동구 구의동 16-3일대	대지면적 : 30,113㎡ 건축면적 [기존 : 8,442.41㎡ 변경 : 8,970.41㎡ (중 528㎡)]	사회복지법인 (소아마비협회) 정 답 화 관 김 원 기 '90.2.27. '90.3.13. (14일간)				
<p>◎양천구공고제14호</p> <p>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및영업정지자공고</p> <p>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2호, 3호, 4호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등록말소 및</p>		<p>영업정지 처분하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 2. 양 천 구 청 장</p>					
<p>1. 등록말소자 명단</p>							
일련 번호	등 록 번 호	상 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말 소 자	말 소 사 유	근 거 법 령 (주 속 법)	
1	84-558	(주)이신주택 최백순	신월동 205-70	90.2.26	청문활동및실적피 제출등록기준미달	제 7 조 2호4호	
2	84-559	(주)동원주택 이봉재	신월동 124-1	"	"	"	
3	86-399	(주)천경주택 이재필	신월동 126-36	"	"	"	
4	88-322	삼림주택건설(주) 임재유	신월동 474-19	"	"	"	
<p>2. 영업정지자 명단</p>							
일련 번호	등 록 번 호	상 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영 업 정 지 일 자	영 업 정 지 기 간	사 유	근 거 법 령 (주 속 법)
1	88-317	영진프라자건설(주) 김길태	신정동 992-4	90.2.26	90.2.26-4.25	실적미달	제7조3호
2	86-401	부천주택(주) 정상진	독동 641-12	"	"	"	"

◎강동구공고제15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공람공고

1. 서울시 고시3호(80.1.18), 657호(87.9.16)로 도시계획 시설결정되고 서울시 고시3호(89.1.18) 및 739호(87.10.21)트 지적 승인된 원호동 191-201간 외 3개소 도로개설공사물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인가를 받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 공고합니다.
 가. 공람장소 : 강동구청 토목과
 나. 공람기간 : 90. 2. 29. - 90. 3. 15.

1990. 2. 19
 강 동 구 청 장

공 랑 개 요

1. 사업명 : 원호동 191-201간의 3개소 도로개설공사





○ 신규 및 폐기 인영

◎마포구공고제21호
관인지교부 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하 도화제 1동장의 관인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인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재교부함을 동규칙 제8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990. 2. 22.
 마 포 구 청 장

○ 사용개시일자 : '90. 3. 1.

인 영	신	규	폐	기
				
공인 명	도화제 1동장인 및 개인 (민원사무전용)		도화제 1동장인 및 개인 (민원사무전용)	

◎도봉구공고제59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공람공고

1. 아래와 같이 시설결정, 지적승인한 다음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2항 및 시행령 제27조2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
 가. 사업개요

사업시행자	사업종류 및 사업명칭	규모	사업기간	결정고시일자	지적고시일자	비고
창3동 481외 4-484외 7	도시계획사업(도로) 창3동 481외 4-484외 7간 도로	B=6m L=130m	90.2-12	서고185호 (73.12.3)	과 동	
쌍문3동 382외 18	도시계획사업(도로) 쌍문3동 382외 16번지 도로개설	B=6-8m L=8m	90.2-12	서고89호 (72.2.17)	과 동	

2. 토지(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도봉구청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시 의견서를 공람공고 기간내 공람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지	사업종류 및 사업명칭	규모	사업기간	결정고시일자	지적고시일자	비고
쌍문3동 380번지	도시계획사업(도로) 쌍문1동 380번지입대 도로포장공사	B=8m L=130m	90.2.-12.	서고138호 (73.8.17)	과 등	
수유4동 154번지	도시계획사업(도로) 수유4동 154도로개설	B=6m L=50m	90.2.-12.	서고89호 (72.6.30)	과 등	
수유3동 38의1	도시계획사업(도로) 수유3동 38의1도로개설	B=6m L=30m	90.2.-12.	진고 9호 (67.1.21)	과 등	
수유4동 556의27-556의1번지	도시계획사업(도로) 수유4동 556의27-556의1도로개설	B=6m L=80m	90.2.-12.	서고89호 (72.6.30)	과 등	
수유4동 285번지	도시계획사업(도로) 수유4동 285도로포장	B=6m L=50m	90.2.-12.	서고124호 (78.3.25)	서고 236 (78.5.26)	
쌍문동 69번지	도시계획사업(도로) 창곡(창경)국교진입로개설	B=8m L=190m	90.2.-12.	서고185호 (73.12.3)	과 등	
번동 70-73번지	도시계획사업(도로) 번2동70-73번지간도로포장	B=6m L=130m	90.2.-12.	서고60호 (74.5.11)	과 등	
쌍문동 414번지	도시계획사업(도로) 쌍문동 414번지도로포장	B=6m L=260m	90.2.-12.	서고80호 (77.3.26)	과 등	

나. 사업의 시행자 : 도봉구청장
 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 : 생략
 라.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생략
 마.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바. 공람장소 : 도봉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토목과 (901 5405-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공람공고

1. 건설부 및 서울시가 결정, 지적승인한 다 음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용 시행로저 도시계획법 제25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
2.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 및 대하 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건설관리과에 비치 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 람하고 있으며, 본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서 를 공람공고 기간내에 공람장소로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1990. 2.
 도 봉 구 청 장

◎도봉구청고제81호

가. 사업개요						
사업시행자	사업의종류및명칭	규 모	착공	준공	결 정 고 시 일 자	지 력 고 시 일 자
미아동 791-2430	미아2동 791번지 도로개설	B=8m L=200m	'90. 2.	'90. 12.31	서고제3호 69.1.18	서고제3호 69.1.18
미아동 1261-555의 23필지	삼양로-도봉로간 도로개설	B=12m L=180m	" "	" "	서고제387호 78.8.3	서고제573호 78.12.21
쌍문동 381-5의 4필지	쌍문동 382의 1-한일병원간 도로개설	B=15m L=350m	" "	" "	건설부고시 제 198 호 71.4.7	건(서)고 제 21 호 72.9.10
미아동 791-3259의	화계사일구-성북구제간 도로개설	B=12m L=300m	" "	'91. 12.31	건고제738호 63.12.24	건고제738호 63.12.24
미아동 636-144의 7필지	미아5동 636번지 도로개설	B=6m L=52m	" "	" "	서고제105호 83.2.24	서고제105호 83.2.24
미아동 766-23의 2필지	미아8동 766일대 도로개설	B=6m L=25m	" "	" "	서고제3호 69.1.18	서고제3호 69.1.18
쌍문동 495-3의 1필지	쌍문1동 490-495간 도로개설	B=15m L=160m	" "	" "	건고제192호 71.4.7	건(서)고제21호 72.9.10
미아동 1268-515의 16필지	미아6동 1268번지 도로개설	B=6m L=210m	" "	" "	서고제105호 83.2.24	서고제105호 83.2.24

<p>나. 사업시행자: 도봉구청장</p> <p>다. 수용할 토지(물건)조서: 별첨 토지(물건)조서</p> <p>라. 위치도: 생략</p> <p>마.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p> <p>바. 공람장소: 도봉구청 건설관리과</p> <p>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건설관리과(901-54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 2. 도 봉 구 청 장 ㉞</p>	<div style="border: 2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bottom: 10px;">사 업 소 고 시</div> <p>◎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 고시제6호</p> <p>하천점용 허가</p> <p>하천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 2. 19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㉞</p>
---	--

허가 년월일	위 치	지목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허가를 받은 자	
						주 소	성 명
1990.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90번지선 (한강)	하천	817.5㎡	유선장설치	1990.2.21~ 1991.2.20	서울송파구 풍납동 190번지선	(주)삼세통 대표 임의룡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 고시제9호
 하천침몰 허가
 하천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침몰을 허가 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0. 2.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

허가 년월일	위 치	지목	침몰면적	침몰목적	침몰기간	허가를 받은 자	
						주 소	성 명
1990. 2.24	서울 성동구 성수 2가 140-2번지선 (한강)	하천	3,025.28㎡	유선장설치	1990.3.4 ~ 1991.3.3	인천직할시 북구신태동 558-10	(주) 세 모 대표이사 유병언

◎1990년 2월 20일자 **6급이하 공무원 특별임용** 령 제69호

성 명	발령 사항	현 부 서	직 급
전 의 상	행정주사	중 토 구	지방행정주사
정 석 린	행정주사보	"	지방행정주사보
김 철 수	"	서 대 문 구	"
김 창 수	"	"	"
정 시 용	행정서기	"	지방행정서기
최 준 영	지방행정주사보	"	행정주사보
장 흥 국	"	영 등 포 구	"
최 순 성	"	"	"
민 욱 근	행정주사보	"	지방행정주사보
고 회 춘	"	"	"
형 추 동	행정서기	강 등 구	지방행정서기
허 권 영	행정주사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주사
남 현 우	"	영 등 포 구	"
오 정 환	"	"	"
송 태 남	"	"	"
김 석 규	지방행정주사	공무원교육원	행정주사
박 완 봉	행정주사보	"	지방행정주사보
박 형 중	"	"	"
전 성 통	"	"	"
김 감 수	"	"	"
김 선 익	행정서기	"	지방행정서기
유 민 구	"	"	"
김 주 철	"	"	"

성 명		발 행 사 항	현 부 서	직 급
◎1990년 2월 20일자 8급 공무원 진출 령 제70호				
이 재 창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성남시 교육청 진출을 명함.	서 초 구	지방행정서기	
◎1990년 2월 23일자 7급공무원 직위해제 령 제71호				
문 영 국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90.2.23부터 ‘90.5.22까지 내무국 대기를 명함)	도 시 개 발 과	지방행정주사보	
인사 발령 통지 령 제72호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교수부 서기관 은 홍 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진출을 명함. 90. 2. 1 대 통 령 지방서기관에 진출을 임함. 내무국 근무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파견(교관요원)근무를 명함.				
◎1990년 2월 23일자 6급이하 공무원 전보 령 제73호				
성 명	발 행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정 두 환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성 동 구	지방행정주사	
김 상 규	"	중 구	지방행정주사보	
김 재 호	"	중 료 구	"	
이 해 종	"	"	"	
이 상 철	"	성 동 구	지방행정서기	
오 준 원	"	서 초 구	"	
김 창 숙	"	성 북 구	지방행정서기보	
박 순 금	"	송 파 구	"	
이 재 원	서림체육시설관리사업소	구 료 구	지방행정주사보	
김 중 구	"	중 구	지방행정서기	
윤 동 호	"	용 산 구	"	
고 원 찬	"	구 료 구	지방행정서기보	
손 남 오	청소년직업훈련원	강 서 구	지방행정주사	
최 영 호	"	서 대 문 구	"	
조 성 표	"	영 동 포 구	"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고영희	청소년외일근원	양원구	지방행정주사
최우환	"	안료파	지방행정주사보
이태부	"	봉대문구	"
박현용	"	내부과	지방행정서기
윤광수	"	"	"
김일보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	마포구	지방행정주사
홍성복	"	종합건설본부	"
장유철	"	"	지방행정주사보
전영철	"	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
김영환	"	동대문구	"
정재범	"	강동구	지방행정서기보
양주석	중랑하수처리장	마포구	"
조한옥	안양하수처리장	중랑구	지방행정서기
주성순	난곡하수처리장	강서구	"
성한태	탄천하수처리장	서대문구	"
이근삼	"	송파구	지방행정주사보
		강남구	지방행정서기

인사 발령 통지

령 제7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
 지방토목기과
 토목기과에 임함.
 환경처 시설기술국 시설과 근무를 명함.

주 부 령
 90. 2. 20 대 통 령

◎1990년 2월 26일자

6급 기술직 공무원 전보

령 제75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한상현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	영등포구	지방토목기사

6급 기술직 공무원 파견

령 제76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도희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 파견 (90. 2. 26. - 12. 31.)	전자계산소	지방기계기사

서울특별시 장